

# 한국의 전자신용장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Related Law in order to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in Korea

김태환(Tae-Hwan Kim)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 경영학박사

## 목 차

I. 서 론	IV. 전자신용장 거래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II. 전자신용장 관련 국내의 주요 법률 현황과 선행연구	V. 결 론
III. 한국의 전자신용장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참고문헌 Abstract

## Abstract

The 21st century is witnessing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usage of internet and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substantial part of such transaction can and do take the form of cross-border transaction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ettled appropriate set of rule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Currently, in respect to e-L/C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laws such as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Act in our country, E-Trade Promotion Act, E-Signature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rine Charter 5 in the Commercial Law.

Nevertheless, a complete legislation, that is a uniform rule for e L/C which could support e L/C transactions fully hasn't been established yet. Accordingly, those laws concerned need to improve to regulate e-L/C transa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national status for law readjustment to prepare for a new electronic environment and to use appropriately the e-L/C issued by electronic means, an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lated regulations to introduce a pertinent laws and propose related regulations to contribute to the making of effective laws to regulate e-L/C.

Key Words : e-Trade, Electronic Letter of Credit(e-L/C), Legal Problem & Improvement

## I. 서론

회환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수출입업자간에 은행이 개입하여 대금지급의 확약과 금융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의 무역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들과 과도한 거래비용의 발생으로 그 사용비율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기존의 종이서류 기반의 무역업무를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무역이라는 새로운 업무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대금결제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현재까지 전자신용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최석범<sup>1)</sup>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신용장이 발행되고 통지되는 무서류 신용장(paperless letter of credit)<sup>2)</sup>을 전자신용장(electronic letter of credit)이라 하였다. 또한, 강원진<sup>3)</sup>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이 전자적 제시에 대한 대금지급확약이라고 전자신용장을 정의하였고, 이제현<sup>4)</sup>은 신용장이 전자방식으로 개설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전자적으로 발행되며, 신용장의 모든 거래업무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채진익<sup>5)</sup>은 전자신용장을 보다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신용장을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통지하는 것, 그리고 전자서류의 매입, 전자서류의 심사, 전자서류의 도착통지 및 결제통보, 하자서류의 통지 및 보완(하자서류 매입시), 수입대금의 결제 및 수출입 사후관리 등 전통적인 신용장 거래의 기능과 수혜를 유지하고, 전 프로세스를 전자적으로 이행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전자신용장은 모든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무서류 기반의 발행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신용장과 관련하여 현재 국외에서는 SWIFT의 TSU, Bolero의 SURF, TEDI의 RSP모델 등이 구축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인 U-Trade Hub가 구축되어 실용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적인 정비와는 달리 법률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U-Trade Hub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적인 부분과 기타 전자거래를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자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률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무역촉진법, 전자서

- 1) 최석범,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제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6, p.216; 최석범,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서의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0.12, pp.74-75.
- 2) 무서류 신용장에 대한 표현은 다음에서 인용되고 있음; Peter Jones, “The Paperless Letter of Credit-Bolero’s Legal Platform,” [www.webcom.com/pjones/bolerole.html](http://www.webcom.com/pjones/bolerole.html).
- 3) 강원진, “전자신용장의 국제결제 인프라구축 동향과 해결과제”,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3, p.129.
- 4) 이제현,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04.6, p.78.
- 5)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신용장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향”, 『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2, p.74.

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법의 제5편 해상편 등이 있는데, 이러한 관련법들을 현재의 상황에 알맞은 전자거래에 적합한 규정들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전자적 환경에 대비하고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서 발행되는 전자신용장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국내의 법률 정비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관련법 규정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법률의 도입과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전자신용장을 규율하는 유효한 법률의 제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 II. 전자신용장 관련 국내의 주요 법률 현황과 선행연구

### 1. 국내의 주요 법률 현황

#### 1) 한국의 법률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무역서류의 전자화에 대비하여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에 관한 입법에 어느 정도 이루어져 시행되고는 있다. 1991년에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1996년에 “화물유통촉진법” 등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1999년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및 인증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월 23일에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법률상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의 입법상황은 전자신용장 거래를 전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법제, 즉,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표 1〉 우리나라의 전자신용장 관련 법률상의 수용 현황

법령명	주요내용	전자신용장 관련 내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 법적 효력 확보 전자거래의 안전 및 촉진	전자문서의 정의와 효력 등
전자무역촉진법	전자무역 사업자를 통한 자동화망의 구성 및 이용	전자문서의 표준화
전자서명법	전자인증업무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전자문서의 정의와 활용 및 공개 제한
상법 (제5편 해상)	상행위(商行為), 회사(會社), 보험, 해상(海商)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과 지정요건

자료: 연구자가 정리함.

### (1)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은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토대로 마련되어 그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sup>6)</sup> 1999년 1월에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발효·시행된 이래, 전자문서의 효력과 보관 등에 관한 근본 규정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이다.<sup>7)</sup>

1999년에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확산 및 기술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2002년 1월 19일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 부로 시행되었다. 2002년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제정법의 문제점<sup>8)</sup>을 보완하여 그 입법방향을 전자서명이나 정보보호에 관해서는 해당법률의 규정에 위임하는 근거규정만을 두고 조문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용어정의의 정리,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의 귀속, 수신확인과 효력발생시기 등에 대해서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충실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개정은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전자거래기본법에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해제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토록 명시함으로써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주권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 (2) 전자무역촉진법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EDI 관련법제인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9호로 제정되어, 그 이듬해인 1992년 7월 1일 발효되었고, 2005년 12월 23일에 법률 제7751호로 전면 개정되었다. 현재는 2008년 2월 29일에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무역업무자동화”에서 “전자무역”으로 그 제명을 바꾸고, 마케팅에서 상역·외환·물류·통관·결제 등에 이르는 일련의 무역프로세스를 포괄하고자 한 의도였다.

전자무역촉진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 및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9)</sup> 즉, 전자무역의 개념 정립 및 법체계 통일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전자무역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대외무역법, 무역거래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개념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동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된다.<sup>10)</sup>

6) 최준선,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안)의 비교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4주년 기념학술대회논문집」,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p.53.

7) 현대호,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11, p.18.

8) 제정법이 정교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관련부서(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등)마다 각각의 입법을 추진한 결과, 중복 내지 상호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1년에 전자거래법을 개정하였다.

9) 전자무역촉진법, 제1조.

10) 전자무역촉진법, 제3조.

### (3)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2호로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전자거래기본법과 같이 시행되었는데, 동 법은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중립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의 최근 입법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일부개정을 통해 2002년 4월 1일 부로 시행되었고, 현재는 2008년 2월 29일에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개정 전에 전자서명에 대한 정의를 “비대면 암호화 방법”에 제한하였던 규정을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sup>11)</sup>라고 개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생체인식 전자서명(biometric signature)” 등의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UNCITRAL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법 등에서 취하고 있는 소위 기술중립주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2월 29일에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2)</sup>

### (5) 상법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법 추진경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2007년 7월 3일에 상법(제5편 해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시행령 초안을 법무부가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8년 2월부터는 마련된 시행령 초안을 부처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8년 8월 4일부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선도적인 입법을 한 것으로써 향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무역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법제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자무역의 실현을 위한 큰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 2) 국외 법률 현황

### (1) 기본 법규상의 수용

#### ① 전자적 제시를 위한 신용장 통일규칙의 부칙(eUCP)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 통일규칙의 부칙(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11)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항.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Version 1.1)<sup>13)</sup>은 신용장거래에서 종이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규칙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ICC에서는 이미 제5차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에서 “전송(teletransmiss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신용장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sup>14)</sup> 또한 실무적으로도 SWIFT를 이용한 신용장 데이터의 송신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종이문서에 기반을 둔 국제상거래 관행이 점차 전자문서를 통해 대체되고 있음에 따라 ICC에서는 기존의 UCP 규정을 보충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라는 문제를 UCP에 결부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 ② 미국 통일상법전

1995년에 개정된 “미국통일상법전-제5편 신용장”은 무역과 은행업을 포함한 상사활동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sup>15)</sup>의 형식으로 된 모든 종류의 정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 (2)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은 전자상거래의 한 유형인 EDI, e-Mail 등에 의하여 작성된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모델법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상사규범에 대한 유용한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국제거래법 분야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적 통일을 주도하여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 (3) 전자서명에 관한 법규상의 수용

#### ① GUIDEC

ICC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측면과 인증기관의 설립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에 따라 GUIDEC(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 디지털로 보장되는 국제상거래의 일반관례)를 마련하여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거래 용어 및 상관행의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웹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GUIDEC은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주요 용어의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디지털 서명(digital

13) eUCP는 UCP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UCP의 부칙으로 UCP와 함께 사용되면서 신용장거래에서 종이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공하고자 18개월에 걸친 작업반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eUCP는 완전히 전자적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종이문서와 전자적 제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개정 또는 후속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버전번호를 부여하여 발행되었다.

14) UCP 600은 제11조에 전송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15)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라 함은 EDI, 전자메일, 텔레그램, 팩스, 텔레카피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제2조 a항.)

signature)”이나 “인증(authentication)”이라는 용어의 불명확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장(ensur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데이터 통신문을 보장한다는 것은 보증인이 이를 식별하는 것 이상으로 보장을 한 통신문이 그대로 보존되었음을 승인하고, 법적으로 이에 구속되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6)</sup>

## ② UNCITRAL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법

UNCITRAL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법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제3부로 편입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그렇게 할 경우에 전자상거래모델법이 이미 성공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었고, 많은 다른 국가가 이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UNCITRAL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법을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에 통합하지 않고 이를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 (4) 전자계약에 관한 법규상의 수용

### ① UNCID

무역거래 당사자간의 EDI 교환약정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1988년 국제상업회의소 주관으로 “전송에 의한 무역자료의 교환행위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UNCID, ICC Publication No.452)”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EDI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제통일규칙이다.

### ② UNCITRAL 전자계약협약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은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과 그 내용면에서 대동소이하지만,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에는 없는 두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자동화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을 사용한 계약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제12조(계약체결을 위한 자동화시스템의 사용)이고, 둘째는 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기록에 입력 실수(input error)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의 요건하에서 당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14조(전자통신상의 실수)이다. 동 규정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연인(당사자)에 의한 실수가 없이도 컴퓨터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동 자연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가장 발전된 계약체결방법에 대비하는 진일보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5) 전자전자증권에 관한 법규상의 수용

### ① UNCITRAL 해상운송법조약초안(UNCITRAL 운송법조약(로테르담 규칙))

UNCITRAL에서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대체하는 운송법을 새롭게 작성하고 있다. 동 법은 첫째,

16) 서정두, “전자무역에 관련한 국제신용장관습의 최근 동향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제1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1.2, p.101.

해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에도 적용된다는 점, 둘째, 운송인과 화주간에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다는 점, 셋째,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UNCITRAL 해상운송법조약초안에서는 전자선화증권과 관련하여 유통가능 전자운송기록에 대하여 소지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전자통신과 유통가능 전자운송기록을 정의하여, 전자선화증권의 사용이 가능하고, 서면증권 대신에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7)</sup>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자증권의 발행, 점유와 권리이전의 효력은 서면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sup>18)</sup>

본 조약초안은 2008년 12월에 UN 총회에서 UNCITRAL 운송법조약(이하, 로테르담 규칙), 즉, 해상운송화물의 손실과 손해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인 로테르담 규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공식적인 명칭은 “해상으로 일부 또는 전부 국제화물운송 계약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ying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이라 알려져 있지만, 2009년 9월 네덜란드에서 동 규칙에 대한 조인식 갖고, 이후 새로운 명칭으로 지칭될 전망이다, 로테르담 규칙의 발효요건은 20개국 이상 비준이다.

## ② 호주 관련법

호주의 해상운송서류법(Sea-Carriage Document Act, 1997)과 해상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Regulations, 1998)에서 전자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19)</sup>

### 가. 해상운송서류법(1997)

해상운송서류법에서 우선 데이터 메시지를 “전자자료교환, 전자우편, 전보, 텔렉스, 텔레카피를 포함하여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전자적, 광학적 또는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생성되고, 저장되고 전송되는 정보를 의미한다.”<sup>20)</sup>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해상운송서류법에서는 데이터 메시지로 된 해상운송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그 전송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해상운송서류법이 수정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적용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호주 해상운송법(1998)

해상운송법에서 개정된 헤이그규칙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데이터 메시지”란 정보가 프린트 형

17) UNCITRAL 해상운송법조약초안, 제1조.

18) UNCITRAL 해상운송법조약초안, 제8조.

19) 호주 해상운송서류법과 해상운송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자료에서도 다루고 있다; 정완용, “해상법의 IT화 관련 개정의견-전자선화증권의 입법론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5, pp.344-346.

20) 호주 해상운송서류법, 제4조.



식으로 재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자료교환, 전자우편, 전보, 텔렉스 또는 텔레카피 등을 포함하여 전자적, 광학적 또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생성, 저장 또는 전송되는 정보를 의미한다.<sup>21)</sup> 또한, “서면이란 전자우편, 전자자료교환, 팩시밀리 전송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유지되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지장을 포함한다.”<sup>22)</sup>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해상운송법에서도 데이터 메시지로 해상운송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해상운송서류의 이전방법의 법적 효력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해상운송서류법의 내용을 해상운송법에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③ 미국 관련법

미국의 제정법중에서 미국 해상물품운송법 개정안, 미국통일상법전, 통일전자거래법, 전자서명법 등은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가. 미국 해상물품운송법(COGSA) 개정안

미국해법회가 중심이 되어 1936년 해상물품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Act: COGSA)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해상물품운송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1999년에 미의회에 해상물품운송법 개정안(Proposed amendments to the 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9)으로 제출되었다.<sup>23)</sup> 동 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을 포함한 해상운송계약에 관하여 정의규정과 전자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포함하고 있다.

#### 나. 미국 통일상법전(UCC)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도 전자선화증권과 관련하여 권리증권, 대체적인 매체로의 재발행, 전자권리증권의 지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전자선화증권을 유효한 운송서류로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권리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대체서류로서 유형의 권리증권, 즉, 종이서류기반의 권리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형의 권리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자권리증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 제16조에서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UCC 제3장의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을 전자적 형태로 대체하기 위한 규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서 양도가능한 전자기록의 양도성 요건은 UCC 제3장 유통증권상의 “양도성 요건”을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양도가능한 기록에 전자선화증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 통일전자거래

21) 호주 해상운송법 개정헤이그규칙, 제1조 (ba).

22) 호주 해상운송법 개정헤이그규칙, 제1조 (h).

23)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논의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12, p.291.

법도 전자화증권에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 법률의 내용상에서도 미국통일상법전의 내용과 동일하다.

#### 라. 미국 전자서명법

미국 전자서명법 제201조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 지배 등과 관련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통일상법전이나 통일전자거래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 2. 선행연구 분석

### 1) 국제법규 관련 선행연구

Joyner는 전자화환거래를 연구하면서 전자화환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정의차원에서 유효한 서면(operative writing), 신용장양식, 인증 등을 다루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점으로 실수, 사기, 자료점검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다.<sup>24)</sup>

Galland는 무서류 신용장과 인터넷상의 EDI에 관한 연구에서 무서류신용장의 법적 상태와 관련된 의문이 기본계약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커지고 있으며, 전자무역거래의 체결, 운영, 강제는 주로 전자거래 기록의 신뢰할만한 생성, 인증, 처리, 통신, 유지 등에 달려있다고 보았다.<sup>25)</sup>

Whitakers는 신용장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에서 자동화된 신용장을 다루면서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과 제7편, UCP 500, 일반계약법, 증거법률, 미국해상물품운송법, 수출관리차원에서 당시의 법률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법률의 발전을 예상하고 있고,<sup>26)</sup> Lipton은 글로벌 정보시대에서의 화환신용장 법률과 관행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보증신용장에서의 제3자서류(third party document)와 관련된 제3자보증(third party assurance)과 “제3자” 지급조건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화환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sup>27)</sup>

Lee는 국제화환신용장 거래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함의에 관한 연구에서 ICC가 2000년에 도입하려고 하였던 전자무역 및 결제에 관한 통일규칙과 지침(Uniform Rules and Guidelines for Electronic Trade and Settlement: URGETS)과 1997년에 제정한 전신에 의한 무역자료교환에 관한 행위통일규칙(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URCID) 및 전자서명과 형식요건을 언급하

24) Jeffrey E. M. Joyner, “Electronic Documentary Transactions: Can the Existing Statutory Framework Adequately Govern This New Automating Medium,” *Journal of Legislation*, Vol.16, 1989, pp.73-87.

25) Matthew W. Galland, “Paperless Letters of Credit and EDI on the Internet,” *Electronic Markets*, Vol.5, Iss.3, Nov. 1995, pp.13-14.

26) R. David Whitakers, “Letters of Credit and Electronic Commerce,” *Idaho Law Review*, Vol.31, 1995, pp.699-717.

27) Jacqueline D. Lipton, “Documentary Credit Law and Practice in the Global Information Ag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2, 1998, pp.1972-1990.

면서 물품(무체물)에 대한 전자전송의 경우에는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무의미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28)</sup>

서정두는 본격적인 전자무역시대에 대비하여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UCP 500)”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주요국가의 신용장관습이 최근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 향후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층분석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국내외의 무역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sup>29)</sup>

맹수석은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대한 법적 쟁점은 대부분 무역금융수단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의 전자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간 거래인 무역거래의 특성상 각국 법제의 차이로 인한 저촉 위험이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국내법상의 대비와 수용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sup>30)</sup>

장홍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편리성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국제무역관습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각종 무역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신용장통일규칙을 개정할 때 전자통신기술에 의한 전자적 서류를 명시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신용장 통일규칙에 서류거래의 원칙에 전자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31)</sup>

송호신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완전한 전자신용장과 관련하여 전자신용장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제가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 전자신용장의 발행과 통지, 전자기록의 제시와 심사, 양도 등에 관한 종합적 근거와 더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을 위한 법적책임의 귀속주체와 범위에 대한 입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32)</sup>

## 2) 국내법규 관련 선행연구

손경한은 전자거래 입법의 필요성과 전자거래기본법의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동법의 개정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전자거래 환경에 알 맞는 법률의 구비를 강조하였다.<sup>33)</sup>

정완용은 해상법 분야의 IT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자선화증권 법제에 대하여 그 입법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해상법의 IT화를 위하여 해상운송서류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방

28) Ricky J. Lee, “The Implication of Electronic Commerce on International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Business Law International*, Iss.2, 2001, pp.203-204.

29) 서정두, 전계서, pp.89-116.

30) 맹수석, “국제무역금융의 전자화 현황과 법적 과제: 전자신용장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02.11, pp.137-164.

31) 장홍훈, “화환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의 삽입 필요성과 방안”,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1호, 조선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4, pp.219-244.

32) 송호신, “전자신용장의 법리에 대한 해석”, 「인터넷법률」, 제39호, 법무부, 2007.7.

33) 손경한,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방향”, 「저스티스」, 제33권 제2호, 한국법학원, 2000.6; 손경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향”, 「e-commerce」, 제33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1.11.12; 손경한, “한국사이버법의 최근동향”, 「기술과 법」, 창간호, 기술과법연구소, 2002, p.28.

안도 검토하고 있다.<sup>34)</sup>

노재확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의 거래모델을 살펴보았는데, 기반사업자와 전문서비스사업자간의 경쟁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런 두 서비스 기관의 경쟁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을 사용하는 전기통신분야와 이 개념이 도입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필수설비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사용자의 지위 남용의 방지 규정을 참고로 할 경우 개정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어 미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35)</sup>

고형석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와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고찰함과 더불어 개선방안으로 전자거래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sup>36)</sup>

오병철은 전자거래기본법을 국제전자계약협약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였는데, 전자계약협약으로 인해 이미 국내법으로 전자거래에 관한 법규를 갖고 있는 국가는 국내외 전자거래 관련 법규의 통일성 있는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아직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들은 전자계약협약을 그대로 입법화함으로써 간편하게 규범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37)</sup>

### Ⅲ. 한국의 전자신용장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 1. 전자거래기본법상의 문제

##### 1) 당사자 특약의 효력 문제

전자거래기본법은 제6조 내지 제9조에 국한하여 당사자의 특약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38)</sup> 이와 관련하여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은 예외없이 모든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당사자 특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이러한 태도는 모델법을 수용한 것이라는 견해<sup>39)</sup>가 있지만, 모델법도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법규를 특약을 통해 변경할

34) 정완용, 전게서, pp.325-362.

35) 노재확, “공정경쟁관점에서 평가한 전자무역촉진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3, pp.223-238.

36) 고형석,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전자소비자계약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3권 제3호(통권 제3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9, pp.17-49.

37)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통권 제3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12, pp.83-132.

38)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

39) 정완용, “UNCITRAL 전자계약협약(초안)의 검토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연구』, 제9호, 국제법무학회, 2005, p.84.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제2장과 제3장 모두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은 모델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 송신시기의 문제

전자계약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10조의 송·수신시기와 장소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공간의 개념이 물리적인 환경과 상이한 사이버 공간(cyber space)에서 어떻게 시·공간적 판단을 할 것인가는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송·수신시기와 장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과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송신시기에 대한 규정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송신시기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sup>40)</sup>인 반면, 전자계약협약의 송신시기는 작성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떠난 때 혹은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하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sup>41)</sup>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송신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완전히 작성자에게 부담시키는 반면,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서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신자의 책임한도를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보다는 좀 더 부담시키고 있다. 결국,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신시기는 수신시기와 같은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전자적 통지는 모두 대화자 방식으로 확일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sup>42)</sup>

## 3) 수신시기의 문제

수신시기에 관해서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계약협약은 서로 상이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전자계약협약은 수신시기를 크게 전자적 주소를 지정하고 그 주소로 통지한 경우와 수신자의 다른 주소로 온 경우로 크게 2가지로 구분<sup>43)</sup>하고 있는 반면,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수신시기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수용하여 지정된 주소로 통지한 경우, 지정하였으나 다른 주소로 통지한 경우, 수신할 주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3가지로 나누어 규율<sup>44)</sup>하고 있다.

## 4) 당사자의 위치(소재지)

당사자의 소재지를 규율하는 UNCITRAL 전자계약협약 제6조 중 제1항 및 제4항과 제5항은 매우 중

40)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

41) UNCITRAL 전자계약협약, 제10조 제1항.

42) 오병철, “2001년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이론적 검토”, 『연세법학연구』, 제8집 제2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02, p.214. 이하 참조.

43) UNCITRAL 전자계약협약, 제10조.

44)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이버공간에서 당사자의 소재지를 어디로 간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과 이를 모델로 삼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영업소를 파악할 것인가의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제15조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에서 영업소가 복수인 경우나 영업소가 없는 자연인의 경우의 영업소 판단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 5) 서명과 원본성의 문제

서명과 원본성에 관해서도 UNCITRAL 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과 함께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은 개방적인 요건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전자거래기본법은 보다 제한적이고 강화된 요건 하에서 서명과 원본성을 인정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거래에서의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요건하에서 서명과 원본성을 인정받는 반면, 국제거래에서는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요건하에서 인정하게 되는 규범적 이중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전자거래기본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는 없고, 차후에 신중한 검토와 동향파악을 거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2. 전자무역촉진법상의 문제

### 1) 전자무역의 정의 및 범위 문제

전자무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물품등(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뉴라운드에서 서비스무역의 범주에 포함시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ing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적용을 받을지, 아니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새롭게 무형재인 디지털 상품의 범주에 포함시켜 GATT의 적용을 받을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제3의 형태로 파악할 지가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소프트웨어, 서적 혹은 영화 등의 물리적 대체물을 갖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송은 GATT에 준하는 적용으로 보다 자유로운 전자거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EU들은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와 관련하여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상품인 서비스로 분류하여 GATS의 규율을 받아,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GATT와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를 디스켓에 탑재하여 국경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디스켓 자체는 물품으로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그 내용물은 서비스로 취급되어 GATS의 적용을 받게 된다.<sup>45)</sup>

실제로 전자거래의 대상인 대부분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서비스재의 성격과 디지털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문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sup>46)</sup> 첫째, 전자무역기반시설 구성의 적정성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전담사업자에 의한 기술개발 억제, 지나친 중계기관의 개입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의 증가, 표준화에 대한 독점적 비효율성, 정부 관련부처 등의 관련사업과의 충돌·호환성 부재 또는 이중 활용 등 다양한 문제가 전담사업자의 지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역할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지연과 오차발생,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이 중심이 되는 국가 전체의 전자문서보관과 민간 전담사업자에 의한 전자무역문서보관소간의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자문서의 보관 및 증명부문은 영업상 비밀 노출의 위험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전자무역위원회 소관이 필요하며, 국제협력 사항을 민간 주체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문제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의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KINET와 데이콤 2개를 지정해서 다른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없었으나, 전자무역촉진법하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sup>47)</sup> 이외에도 기반사업자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48)</sup>

그러나, 전자무역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업영역<sup>49)</sup>과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사업영역<sup>50)</sup>을 비교해보면, 전자문서의 중계사업, 외국과의 연계를 활용한 사업 그리고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 서비스관련 사업에서 사업영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 경쟁관계로 인한 효과적인 제도의 발전이라는 명제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무역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 비하여 더 우월한 독점적인 위치를 향유

45)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e-비즈니스백서」, 2005.3, p.361.

46) 최용록, “전자무역지원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12, pp.280-282.

47) 전자무역촉진법하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KINET 만을 지정하고 있다.

48) 전자무역촉진법, 제22조 내지 제23조 참조.

49) 전자무역촉진법, 제6조.

50) 전자무역촉진법, 제22조.

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도 없고, 이는 결국 전자무역기반시설의 확산과 활용 및 전자무역의 촉진에 역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sup>51)</sup>

#### 4)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관련 문제

전자무역촉진법은 기존의 대외무역법상에 규정되어 있던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업무를 보다 확대하여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무역촉진법상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구체적인 사업범위에 대하여 제22조 제1항은 현행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업무 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업무를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업자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제25조에서는 정부가 전자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전반적인 업무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전자무역 e-마켓플레이스와 대동소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역업자의 전자무역 실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대행, 해외 마케팅 지원,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기존의 전자무역 e-마켓플레이스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상의 애로를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 3. 전자서명법상의 문제

전자적 통지에의 서명과 원본성에 관하여 UNCITRAL 전자계약협약과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은 매우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은 기술적 중립성에 철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전자서명법은 제한된 형태의 공인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비공인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약이 없다면 비공인 전자서명은 아예 서명이나 원본성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2005년 3월 31일 개정을 통해 제5장의2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핵심내용은 대부분의 행정적 규정을 제외하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무결성을 추정하는 것이다.<sup>52)</sup> 이 규정을 둬으로써 공인전자서명이 없어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중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

51) 노재환, 전계서, p.226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52)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7.



으로 추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 1) 송신시기의 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거래기본법을 모델로 하여 각종 용어나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신시기에 관해서도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송신시기에 대한 규정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송신시기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sup>53)</sup>인 반면,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송신시기는 작성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떠난 때 혹은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하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sup>54)</sup>로 규정하고 있다.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기타 대부분의 국제규범이나 주요 국가의 입법례는 수신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송신시기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송신시기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전자계약협약의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수신시기의 문제

수신시기에 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계약협약은 서로 상이한 규정을 하고 있다. 전자계약협약은 수신시기를 크게 전자적 주소를 지정하고 그 주소로 통지한 경우와 수신자의 다른 주소로 온 경우로 크게 2가지로 구분<sup>55)</sup>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신시기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지정한 주소로 통지한 경우, 지정하였으나 다른 주소로 통지한 경우, 수신할 주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3가지로 나누어 규율<sup>56)</sup>하고 있다. 이러한 수신시기와 관련된 문제는 역시 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기본적으로 모델로 삼고 있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중 어느 규율이 더 타당한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로써, 전자계약협약에 대한 각국의 동향과 제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자거래시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한 개정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54) UNCITRAL 전자계약협약, 제10조 제1항.

55) UNCITRAL 전자계약협약, 제10조.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IV. 전자신용장 거래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1. 전자거래기본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1) 당사자 특약의 효력과 관련한 개선방안

전자거래 관련 모든 비교대상 법규가 취하고 있는 임의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우리 전자거래기본법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거래기본법도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에 대응하는 제2장은 모두 당사자의 특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송신시기에 대한 개선방안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신시기는 수신시기와 같은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송신시기와 관련한 기타 국제규범이나 주요 국가의 입법례는 수신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송신시기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신시기에 관한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은 전자계약협약의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수신시기에 대한 개선방안

전자계약협약은 수신시기를 크게 전자적 주소를 지정하고 그 주소로 통지한 경우와 수신자의 다른 주소로 온 경우로 크게 2가지로 구분<sup>57)</sup>하고 있는 반면,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수신시기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수용하여 지정한 주소로 통지한 경우, 지정하였으나 다른 주소로 통지한 경우, 수신할 주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3가지로 나누어 규율<sup>58)</sup>하고 있다. 이러한 수신시기와 관련된 문제는 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기본적으로 모델로 삼고 있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중 어느 규율이 더 타당한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로서, 전자계약협약에 대한 각국의 동향과 제정 상황을 살펴가면서 전자거래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한 방향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4) 당사자의 소재지에 대한 개선방안

사이버공간에서 당사자의 소재지를 어디로 간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과 이를 모델로 삼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무

57) UNCITRAL 전자계약협약, 제10조.

58)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엇을 기준으로 영업소를 파악할 것인가의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제15조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에서 영업소가 복수인 경우나 영업소가 없는 자연인의 경우의 영업소 판단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와 영업에 필요한 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의 위치가 다른 경우는 전자거래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영업소의 판단을 일차적으로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로 추정하되, 영업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되어 있어도 서버나 ISP의 존재위치를 들어 그 곳을 영업소로 인정하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도메인 네임이나 전자적 주소의 국가적 표지를 들어 추정력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천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1항 및 제4항과 제5항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5) 서명과 원본성에 대한 개선방안

서명과 원본성에 관해서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은 개방적인 요건을 취하는 반면 전자거래기본법은 보다 제한적이고 강화된 요건 하에서 서명과 원본성을 인정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 거래에서의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요건하에서 서명과 원본성을 인정받는 반면, 국제거래에서는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요건하에서 인정하게 되는 규범적 이중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전자거래기본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와 동향파악을 거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2. 전자무역촉진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1) 전자무역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전자거래의 대상인 대부분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서비스재의 성격과 디지털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은 대단한 것이나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2)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성 및 운영상의 적정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부문은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관할로 전환하고, 기타 영리적 업무는 공개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기술 및 서비스와 업무개발을 단순사업자(기술개발사업자, 기술활용

서비스업체)로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존의 정책적 패러다임은 기술개발의 주체로서 기반사업자와 전자무역기반시설과의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형 체제로 전환할 경우 특정 기준이나 표준에 적합여부만 정부(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호환성이 있는 다양한 솔루션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부 내지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다양한 기술표준과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중립적 전자무역기반시설 관리자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는 기반시설과 분리하여 기술제공자 또는 제공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업자로서 보다 경쟁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59)</sup>

###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전자무역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사업영역을 고려해 볼 때, 양사업자간의 사업영역의 중복으로 인하여 경쟁관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양사업자간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경쟁의 도입과 촉진이라는 조치가 반영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률만으로 실제 실행에 있어서도 경쟁이 보장되면서 공정하고 안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를 위해 전자무역촉진법 제9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각기 다른 서비스 요금을 적용할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sup>60)</sup>

따라서 시장지배적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규정이 필요하며,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그러한 경우가 재발 경우 어떠한 제재가 필요하며, 사업의 영위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제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기반사업자와 전문서비스업자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의 영위를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4)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전자무역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전반적인 업무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전자무역 e-마켓플레이스와 대동소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역업자의 전자무역의 실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대행, 해외

59) 최용록, 전계서, p.293.

60) 노계환, 전계서, p.226.

마케팅 지원,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역할을 차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정의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그 지정기준과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여 차별성에 중점을 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성화라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본래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즉, 중소기업만을 위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3. 전자서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전자적 통지에의 서명과 원본성에 관하여 UNCITRAL 전자계약협약과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의 규정은 매우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법도 전자거래기본법에서처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인전자서명이 없어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중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1) 송신시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기타 국제규범이나 주요 국가의 입법례는 수신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송신시기로 보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송신시기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수신시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수신시기에 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계약협약은 서로 상이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신시기와 관련된 문제는 역시 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기본적으로 모델로 삼고 있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중 어느 규율이 더 타당한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로서, 전자계약협약에 대한 각국의 동향과 제정 상황을 살펴가면서 전자거래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한 방향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한국의 전자신용장 도입상의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거래기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 특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전자거래 관련 모든 비교대상 법규가 취하는 임의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우리 전자거래기본법만 제한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거래기본법도 전자계약협약의 내용에 대응하는 제2장은 모두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은 전자계약협약의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수신시기와 관련하여 전자계약협약은 수신시기를 크게 전자적 주소를 지정하고 그 주소로 통지한 경우와 수신자의 다른 주소로 온 경우로 크게 2가지로 구분<sup>61)</sup>하고 있는 반면,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수신시기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수용하여 지정한 주소로 통지한 경우, 지정하였으나 다른 주소로 통지한 경우, 수신할 주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3가지로 나누어 규율<sup>62)</sup>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신시기와 관련된 문제는 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기본적으로 모델로 삼고 있는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중 어느 규율이 더 타당한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로서, 전자계약협약에 대한 각국의 동향과 제정 상황을 살펴가면서 전자거래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한 방향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④ 당사자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1항 및 제4항과 제5항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⑤ 서명과 원본성에 관해서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은 개방적인 요건을 취하는 반면 전자거래기본법은 보다 제한적이고 강화된 요건 하에서 서명과 원본성을 인정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와 동향파악을 거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무역촉진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① 전자무역의 정의 및 범위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하고, ②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부문은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관할로 전환하고, 기타 영리적 업무는 공개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기술 및 서비스와 업무개발을 단순사업자(기술개발사업자, 기술활용서비스업체)로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문제와 관련하여 전자무역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사업영역을 고려해 볼 때, 양사업자간의 사업영역의 중복으로 인하여 경쟁관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규정이 필요하며,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④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와 관련하여

61) UNCITRAL 전자계약협약, 제10조.

62)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역할을 차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정의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그 지정 기준과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여 차별성에 중점을 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전자서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전자적 통지에의 서명과 원본성에 관하여 전자서명법도 전자거래기본법에서처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인전자서명이 없어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중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① 송신시기에 대한 향후 개선과제로 송신시기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② 수신시기에 대한 향후 개선과제로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대한 각국의 동향과 제정 상황을 살펴가면서 전자거래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한 방향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원진, “전자신용장의 국제결제 인프라구축 동향과 해결과제”,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3.
- 고형석,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전자소비자계약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3권 제3호 (통권 제3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9.
- 노재환, “공정경쟁관점에서 평가한 전자무역촉진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국제 e-비즈니스학회, 2006.3.
- 맹수석, “국제무역금융의 전자화 현황과 법적 과제: 전자신용장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02.11.
- 서정두, “전자무역에 관련한 국제신용장관습의 최근 동향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제1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1.2.
- 손경한,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방향”, 「저스티스」, 제33권 제2호, 한국법학원, 2000.6.
- 손경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향”, 「e-commerce」, 제33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1.11.12.
- 손경한, “한국사이버법의 최근동향”, 「기술과 법」, 창간호, 기술과법연구소, 2002.
- 송호신, “전자신용장의 법리에 대한 해석”, 「인터넷법률」, 제39호, 법무부, 2007.7.
- 오병철, “2001년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이론적 검토”, 「연세법학연구」, 제8집 제2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02.
-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통권 제3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12.
- 이제현,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04.6.
- 장흥훈, “회환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의 삽입 필요성과 방안”,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1호, 조선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4.
- 정완용, “해상법의 IT화 관련 개정의견-전자선하증권의 입법론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5.
- 정완용, “UNCITRAL 전자계약협약(초안)의 검토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연구」, 제9호, 국제법무학회, 2005.
-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신용장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향», 「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2.
- 최석범,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서의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0.12.
- 최석범,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제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6.
-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논의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12.
- 최용록, “전자무역지원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12.
- 최준선,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안)의 비교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4주년 기념학술대회논문집」,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e-비즈니스백서」, 2005.3.
- 현대호,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11.
- D. Lipton, Jacqueline, “Documentary Credit Law and Practice in the Global Information Ag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2, 1998.
- E. M. Joyner, Jeffrey, “Electronic Documentary Transactions: Can the Existing Statutory Framework Adequately Govern This New Automating Medium,” *Journal of Legislation*, Vol.16, 1989.
- Galland, Matthew W., “Paperless Letters of Credit and EDI on the Internet,” *Electronic Markets*, Vol.5, Iss.3, Nov., 1995.
- J. Lee, Ricky, “The Implication of Electronic Commerce on International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Business Law International*, Iss.2, 2001.
- Joyner, Jeffrey E. M., “Electronic Documentary Transactions: Can the Existing Statutory Framework Adequately Govern This New Automating Medium,” *Journal of Legislation*, Vol.16, 1989.
- Lee, Ricky J., “The Implication of Electronic Commerce on International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Business Law International*, Iss.2, 2001.
- Lipton, Jacqueline D., “Documentary Credit Law and Practice in the Global Information Ag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2, 1998.
- R. David Whitakers, “Letters of Credit and Electronic Commerce,” *Indaho Law Review*, Vol.31, 1995.
- W. Galland, Matthew, “Paperless Letters of Credit and EDI on the Internet,” *Electronic Markets*, Vol.5, Iss.3, Nov. 1995.
- Whitakers, R. David, “Letters of Credit and Electronic Commerce,” *Indaho Law Review*, Vol.31, 1995.